

편집위원 선정 절차 규정

1993. 5. 17 제정 / 2010. 2. 18 개정

1. 전체 이사회회의에서 6인 이하의 편집이사를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분야 전문영역별로 선출한다.
2. 편집위원은 편집이사회에서 위촉하며 마이크로전자, 패키징 및 기타 관련 전문분야의 3개 전문영역에서 각 5~7명을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.
3.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한다. 단, 회장은 필요시 회장단의 임기 중이라도 편집위원의 위촉이 가능하며, 이와 같은 경우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4. 편집위원회 회의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를 포함하며,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,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논문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. 단, 논문심사위원을 본 학회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이한 경우에는 학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제정 일자 : 1993년 5월 17일
2. 1회 개정일자 : 2002년 1월 15일
3. 2회 개정일자 : 2010년 2월 18일
4. 본 규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적용한다.